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20일,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4.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30.)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현행법에서 농업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의 대상이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뿐 아니라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까지를 포함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등으로 현재는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우나, 국가적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이 있는 농업 유관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이 농업의 개념을 확장하게 되면, 현행법에 따른 식품 산업과 농업의 범위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제도의 운영과 해석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과 유관 법률 전반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